

질병관	임청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1. 2. 6. (ਵ		
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과 장	조 우 경		043-719-7680
전략기획팀	담 당 자	최 상 미, 최 은 경	043-719-9365	
환자관리팀	과 장	곽 진		043-719-9100
완자산다림	담 당 자	유 미, 김 지 아	 전화	043-719-9319
자원관리팀	과 장	하 진	건 약 	043-719-7430
자원한다림 	담 당 자	황 영 순		043-719-9152
역학조사팀	과 장	박 영 준		043-719-9364
ㅋㅋ조사님	담 당 자	김 영 만		043-719-7967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연황 (정례브리핑)

-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2월 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66명, 해외유입 사례는 2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0,524명(해외유입 6,472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6,175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2,406건(확진자 56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8,581건, 신규 확진자는 총 393명이다.
    -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388명으로 총 70,505명(87.56%)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55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97명,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464명(치명률 1.82%)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2.6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366	142	14	18	24	12	8	2	0	108	1	2	13	1	1	4	10	6
누계	74,052 <sup>1)</sup>	24,205	2,758	8,250	3,741	1,773	1,066	860	172	19,063	1,666	1,531 <sup>1)</sup>	1,964	957	697	2,928	1,919	502

<sup>1)</sup> 역학조사 결과 추정감염지역 변경(2.5. 0시 기준) : 충북 국내발생 -1명, 해외유입+1명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6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 •		•				
ĺ	구분	합계			(추정)	유입국가 <sup>*</sup>			확인	단계	국적	
	구군 업계		중국	아시아(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Ī	신규	27	0	11	3	12	1	0	11	16	10	17
ı	느게	6.472 <sup>1)</sup>	38	2,910 <sup>1)</sup>	1,118	2,122	261	23	2,785	3,687 <sup>1)</sup>	3,541 <sup>1)</sup>	2,931
١	ᅵᅮᆀᆝ	0,472"	(0.6%)	(45.0%)	(17.3%)	(32.7%)	(4.0%)	(0.4%)	(43.0%)	(57.0%)	(54.7%)	(45.3%)

<sup>\*</sup>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1명), 인도 1명(1명), 인도네시아 4명(4명), 러시아 2명, 아랍에미리트 3명(1명), 유럽 : 헝가리 1명, 오스트리아 1명(1명), 터키 1명, 아메리카 : 미국 9명(9명), 아르헨티나 1명, 캐나다 2명, 아프리카 : 르완다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1) 역학조사 결과 추정감염지역 변경(2.5. 0시 기준) : 충북 국내발생 -1명, 해외유입(아시아) +1명, 지역사회 +1명, 내국인 +1명)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2.5.(금) 0시 기준	70,117	8,555	200	1,459
2.6.(토) 0시 기준	70,505	8,555	197	1,464
변동	(+)388	0	(-)3	(+)5

<sup>\* 2</sup>월 5일 0시부터 2월 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sup>※</sup>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sup>\*\*</sup>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 2월 6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2월 6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66명이며(최근 1주간일 평균 354.6명), 수도권에서 274명(74.9%) 비수도권에서는 92명 (25.1%)이 발생하였다.

(주간: 1.31일~2.6일, 단위: 명)

						· · —		,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구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 <del>북</del> )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2.6일(0시 기준)	366	274	23	14	22	26	1	6
주간 일 평균	354.6	257.6	20.6	20.6	18.7	29.7	5.7	1.7
주간 총 확진자 수	2,482	1,803	144	144	131	208	40	12

## ○ 수도권

(주간: 1.31일~2.6일, 단위: 명)

구분	1.31.	2.1.	2.2.	2.3.	2.4.	2.5.	2.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223	204	199	309	337	257	274	257.6	1,803
서울	97	104	121	184	166	122	142	133.7	936
인천	19	11	8	18	43	25	24	21.1	148
경기	107	89	70	107	128	110	108	102.7	719

- (서울 강북구 사우나 관련)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7명\*이다.
  - \* (구분) 이용자 12명(+5), 종사자 3명(지표포함, +2), 가족 5명(+2), 지인 7명(+3)
- (서울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 격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0명\*이다.
  - \* (구분) 환자 30명(+2), 종사자 9명(+1), 간병인 17명(+3), 가족/보호자 24명(지표포함, +1)









- (서울 중구 복지시설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3명\*이다.
  - \* (구분) 종사자 2명(지표포함), 이용자 등 79명(+5), 지인 2명
- (서울 강동구 한방병원 관련) 2월 2일 이후 격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3명\*이다.
  - \* (구분) 환자 19명(지표포함, +3), 가족/보호자 2명, 종사자 1명, 기타 1명
- (경기 안산시 인테리어업 관련) 2월 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 (구분) 종사자 10명(지표포함), 가족 4명
- (경기 안산시 병원3 관련) 2월 2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2 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 \* (구분) 환자 8명(지표포함, +1), 가족 3명, 종사자 4명, 기타 1명(+1)
- (경기 남양주시 요양원2 관련) 2월 3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 **(구분)** 종사자 7명(지표포함), 입소자 11명(+2)
- (경기 군포시 교회 관련)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 \* (구분) 교인 10명(지표포함), 기타 3명, 가족 2명(+2)
- (인천 연수구 무역회사) 2월 4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0명\*이다.
  - \* (구분) 지표가족 4명(지표포함), 동료 13명(+2), 지인 2명(+2), 가족 1명(+1)









## ○ 충청권

(주간 : 1.31일~2.6일, 단위 : 명)

구분	1.31.	2.1.	2.2.	2.3.	2.4.	2.5.	2.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7	8	23	51	19	13	23	20.6	144
대전	-	-	-	7	2	-	8	2.4	17
세종	2	-	-	1	-	-	-	0.4	3
충북	1	5	18	8	4	2	2	5.7	40
충남	4	3	5	35	13	11	13	12.0	84

- (충북 음성군 축산물업체 관련) 2월 4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 (구분) 종사자 14명(지표포함, +2), 가족 3명

## ○ 호남권

(주간: 1.31일~2.6일, 단위: 명)

구분	1.31.	2.1.	2.2.	2.3.	2.4.	2.5.	2.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19	33	27	22	15	14	14	20.6	144
광주	16	32		6	12	14	12	16.4	115
전북	2	1	2	10	1	-	1	2.4	17
전남	1	-	2	6	2	-	1	1.7	12

- (광주 서구 교회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 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0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교회 1 관련	83(+2)	교인 42명(지표포함, +1), 가족 20명(+1), 기타 21명
② 교회 2 관련	18	교인 15명, 가족 1명, 기타 2명
③ 어린이집 관련	11	원아 3명, 교직원 2명, 가족 4명, 기타 2명
④ 고등학교 관련	7	학생 7명
⑤ 청소업체 관련	11	종사자 6명, 가족 5명









## ○ 제주

(주간: 1.31일~2.6일, 단위: 명)

구분	1.31.	2.1.	2.2.	2.3.	2.4.	2.5.	2.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제주	1	0	0	1	2	2	6	1.7	12

- (제주 제주시 일가족3 관련) 2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 \* (구분) 지표가족 6명(지표포함), 기타 2명

## ○ 경북권

(주간: 1.31일~2.6일, 단위: 명)

구분	1.31.	2.1.	2.2.	2.3.	2.4.	2.5.	2.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24	13	20	19	13	20	22	18.7	131
대구	9	9	10	9	7	14	18	10.9	76
경북	15	4	10	10	6	6	4	7.9	55

- (대구 동구 일가족4 관련) 2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 \* (구분) 가족 4명(지표포함), 동료 2명, 지인 1명

## ○ 경남권

(주간: 1.31일~2.6일, 단위: 명)

구분	1.31.	2.1.	2.2.	2.3.	2.4.	2.5.	2.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44	19	19	26	35	39	26	29.7	208
부산	20	15	10	18	26	33	14	19.4	136
울산	6	-	-	-	2	-	2	1.4	10
경남	18	4	9	8	7	6	10	8.9	62

- (부산 서구 항운노조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1명\*이다.
  - \* (구분) 종사자 33명(지표포함, +1), 가족 13명(+1), 지인 1명, 기타 4명









- (부산 해운대구 일가족3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 (구분) 일기족 8명(지표포함), 요양서비스대상자 4명, 기족 3명, 동료 1명(+1), 기타 1명(+1)
  - \* (지역) 부산 13명, 경남 4명(+2)
- □ 최근 전국적으로 지속 발생하는 목욕탕·사우나 관련 집단감염 사례의 역학적 특성 및 당부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20년 10월 이후('20.10.1~'21.1.29) 목욕탕·사우나 관련 집단감염은 **총 24건**(수도권 12건, 비수도권 12건)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다.
  - 주요 위험 요인은 <sup>△</sup>지하에 있어 환기가 어려운 구조적 특성, <sup>△</sup>밀폐공간에서의 장시간(2~3시간) 체류, <sup>△</sup>공용공간(탈의실·수면실, 식당, 운동공간 등)의 이용, <sup>△</sup>일행 간의 식사 등이었다.
  - 방역당국은 목욕탕·사우나는 마스크의 지속 착용이 어려운 활동의 특성, 밀폐된 공간을 이용하는 공간적 특성으로 감염 확산의 우려가 높으므로,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요청하였다.
    -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한증막·찜질 시설의 이용 자제, 탈의실·매점 등 공용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해야 한다.
    - 또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음식 섭취는 하지 않고, 해당 시설에서 모임·대화 자제, 수면실 등 밀폐된 공간에 오랜 시간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 특히, 시설 관리자(사업주)는 **동 시간대 이용인원**\* 준수, 마스크 착용 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소독과 환기 등 안전한 시설 이용이 되도록 방역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 수도권(거리두기 2.5단계)은 시설허가·신고면적 16m² 당 1명, 수도권 외 (거리두기 2단계)는 시설허가·신고면적 8m² 당 1명
-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된 상황은 다음과 같다.
  - 해외유입사례 총 56건의 검체를 분석한 결과, 44건은 미검출, 12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었다.
    - \* (영국 변이) 10건 확인(외국인 3, 내국인 7)
      - : ^UAE 發 3인(내국인 3), ^나이지리아 發 1인(내국인), ^노르웨이 發 1인(외국인), ^헝가리 發 1인(내국인), ^이라크 發 1인(내국인), ^프랑스 發 1인(외국인), ^중국 發 1인(외국인), ^폴란드 發 1인(내국인)
    - \*\* (남이공 변이) 2건 확인(외국인 2): <sup>스</sup>탄자니아 發 2인(외국인 2)
  - 변이바이러스로 확인된 12명 중 3명은 검역단계에서, 나머지 9명은 입국 후 자가격리 중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되었다.
    - 접촉자 중 현재까지 변이주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없으며, 동일 항공기 근접 좌석\* 탑승객 중 2명이 코로나19로 확진 되어 변이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 \* 환자 좌석 해당 열(row)과 환자 좌석 앞·뒤 2열 전체 탑승객(총 5열)
    - 또한, 입국 후 자가격리 중 접촉 가능성이 있는 동거 가족 3명, 지인 1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 및 자가격리 조치하였다.
      - \* 코로나19 검사 결과 4명 모두 음성 확인









- 아울러,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51건이다.
  - \* (영국 변이)37건, (남아공 변이)9건, (브라질 변이)5건 (21.2.6일 0시 기준)
  - \* 총 2,660건 분석 완료(국내발생 1,910건, 해외유입 750건 / '21.2.6일 0시 기준)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항체치료제로** 조건부 품목 허가된 '렉키로나주 960mg(레그단비맙)' 관련 공급방식 등을 설명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렉키로나주 960mg(레그단비맙)'를 한시적으로 직접 구매하여 2월 중순\*부터 의료기관에 공급할 계획이다.
    - \* 계약, 제조사 제품 공급 준비, 공급 관리 계획 수립 등 준비 기간 고려
  - 치료제 **투여대상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된 범위를 대상으로 하며,
    - \*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을 가진 경증 환자 및 폐렴 동반 환자(산소치료 필요 환자 제외)에 대하여 증상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투여
    - 의료기관이 제약사로부터 치료제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치료제 사용과 관련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 유지\*(2.14일 24시까지) 조치는 백신접종, 3월 등교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 께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한번 더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유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설 연휴 방역대책 유지하되, 비수도권에 대해 운영시간 제한을 완화(2.8(월) 0시부터 21시—22시)









- 특히, 다가오는 설 연휴에 거리두기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야만, 감염 재확산 없이, 안전하게 백신접종과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중요한 세 가지 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였다.
  - 첫째, 가급적 모든 사적인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며, 종교 활동, 모임·행사는 비대면·비접촉으로 진행한다.
  - 둘째,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식사, 음주, 흡연과 같은 상황은 가급적 피한다.
    -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



- 셋째,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 하게 검사를 받는다.
-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의심 환자 또는 호흡기 중상 환자가 방문할 경우 검사의뢰서를 적극 발급하여,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 절차 없이 신속 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하였다.

<설 연휴 방역수칙 포스터(붙임6 참조)>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 ~ '21.2.14.)
-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 ~ '21.2.14.)
- 5. 설 특별방역대책 주요내용
- 6. 설 연휴 방역수칙 포스터
- 7. 수도권·수도권 외 목욕장업 방역지침
- 8. IM 선교회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및 관련환자 현황
- 9.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별첨> 1.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

- 2.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 3.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 4.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 5.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 6.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 8.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 9.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 10.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 1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 1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1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14.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1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20.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2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2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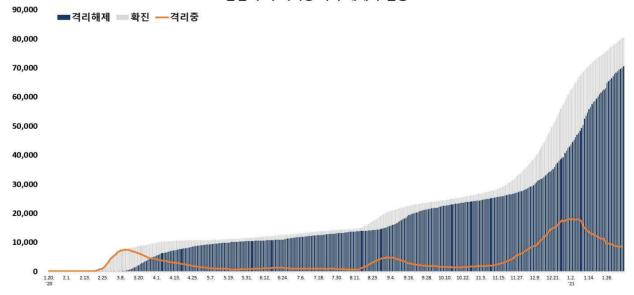
## ① 일일 확진자 현황 (2.6. 0시 기준, 80,524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역			검사 중	결과 음성	
1 E	0 71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0	르뛰 ㅁㅇ	
2.5.(금) 0시 기준	5,847,178	80,131	70,117	8,555	1,459	107,457	5,659,590	
2.6.(토) 0시 기준	5,893,353	80,524	70,505	8,555	1,464	97,677	5,715,152	
변동	+46,175	+393	+388	0	+5	-9,780	+55,562	

- \* 2월 5일 0시부터 2월 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일일 누적 격리중·격리 해제자 현황











# ② **지역별 확진자 현황** (2.6. 0시 기준, 80,524명)

##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b>ヽ ハーピ ゴビ州 じら</b> (20.1.32 リナ ナ州) /							
지역	금일	신규	확진자누계	(0/)	인구10만명당		
시탁	국내발생	해외유입	복선시구계	(%)	발생률 <sup>*</sup>		
서울	142	1	25,023	(31.08)	257.08		
부산	14	0	2,876	(3.57)	84.30		
대구	18	0	8,378	(10.40)	343.86		
인천	24	1	3,948	(4.90)	133.55		
광주	12	0	1,883	(2.34)	129.27		
대전	8	0	1,115	(1.38)	75.64		
울산	2	0	943	(1.17)	82.21		
세종	0	0	197	(0.24)	57.55		
경기	108	6	20,450	(25.40)	154.34		
강원	1	0	1,730	(2.15)	112.30		
충북	2	0	1,616	(2.01)	101.04		
충남	13	0	2,100	(2.61)	98.94		
전북	1	3	1,059	(1.32)	58.27		
전남	1	0	762	(0.95)	40.86		
경북	4	3	3,064	(3.81)	115.08		
경남	10	2	2,060	(2.56)	61.29		
제주	6	0	535	(0.66)	79.76		
검역	0	11	2,785	(3.46)	-		
총합계	366	27	80,524	(100)	155.31		

<sup>\*</sup>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sup>\*\*</sup>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п п	ᇵ게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구 분	합 계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8,555	3,681	366	122	341	386	67	21	8	1,967	169	136	172	60	76	228	179	17	559
격리해제	70,505	21,009	2,414	8,046	3,556	1,478	1,034	885	188	18,043	1,528	1,423	1,895	949	679	2,766	1,871	518	2,223
사망	1,464	333	96	210	51	19	14	37	1	440	33	57	33	50	7	70	10	0	3
합 계	80,524	25,023	2,876	8,378	3,948	1,883	1,115	943	197	20,450	1,730	1,616	2,100	1,059	762	3,064	2,060	535	2,785

<sup>\* 2</sup>월 5일 0시부터 2월 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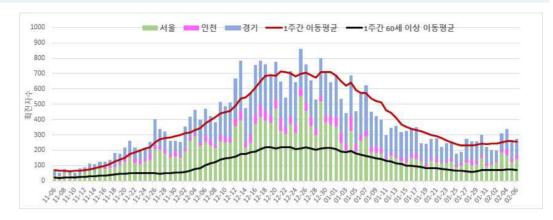


<sup>※</sup>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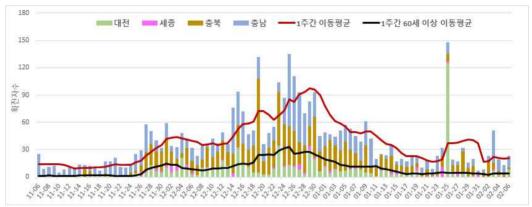


###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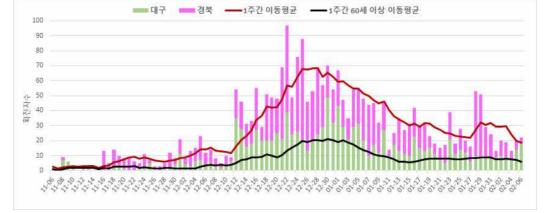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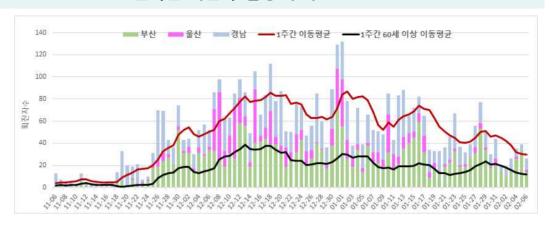






###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 ③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2.6. 0시 기준, 80,524명)

		< 확진자	성별, 연령빌	<b>불 발생현황</b> :	>	
7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100)	80,524	(100)	155.31
 성별	남성	199	(50.64)	39,556	(49.12)	152.95
O Z	여성	194	(49.36)	40,968	(50.88)	157.66
	80세 이상	13	(3.31)	4,024	(5.00)	211.88
	70-79	30	(7.63)	6,168	(7.66)	171.00
	60-69	63	(16.03)	12,642	(15.70)	199.27
	50-59	77	(19.59)	15,086	(18.73)	174.06
연령	40-49	60	(15.27)	11,574	(14.37)	137.96
	30-39	41	(10.43)	10,284	(12.77)	145.97
	20-29	53	(13.49)	12,239	(15.20)	179.82
	10-19	31	(7.89)	5,390	(6.69)	109.10
	0-9	25	(6.36)	3,117	(3.87)	75.13

<sup>\*</sup>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4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2.6.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7	-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5	(100)	1,464	(100)	1.82			
 성별	남성	2	(40.00)	724	(49.45)	1.83			
O Z	여성	3	(60.00)	740	(50.55)	1.81			
	80세 이상	4	(80.08)	830	(56.69)	20.63			
	70-79	0	(0.00)	398	(27.19)	6.45			
	60-69	1	(20.00)	170	(11.61)	1.34			
	50-59	0	(0.00)	48	(3.28)	0.32			
연령	40-49	0	(0.00)	12	(0.82)	0.10			
	30-39	0	(0.00)	6	(0.41)	0.06			
	20-29	0	(0.00)	0	(0.00)	0.00			
	10-19	0	(0.00)	0	(0.00)	0.00			
	0-9	0	(0.00)	0	(0.00)	0.00			

<sup>\*</sup>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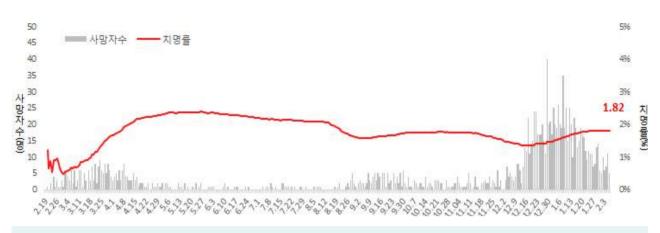


<sup>※</sup>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sup>※</sup>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 일별 사망자 현황 >



### < 위중증 현황 >

구분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2.1. 2.2. 2.3. 2.4. 2.5. 2.6. 계 282 275 270 270 251 239 231 229 225 224 220 211 200 197

구분	위중증	(	%	)
계	197	(	100.0	)
80세 이상	43	(	21.8	)
70-79세	83	(	42.1	)
60-69세	52	(	26.4	)
50-59세	11	(	5.6	)
40-49세	4	(	2.0	)
30-39세	4	(	2.0	)
20-29세	0	(	0.0	)
10-19세	0	(	0.0	)
0-9세	0	(	0.0	)

<sup>\*</sup>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sup>※</sup>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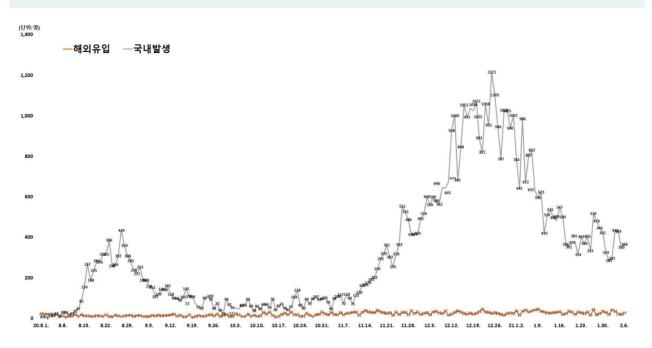






## **⑤ 감염경로**

###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 최근 2주간 ('21.1.24일 0시~'21.2.6일 0시까지 신고된 5,835명) 감염경로 구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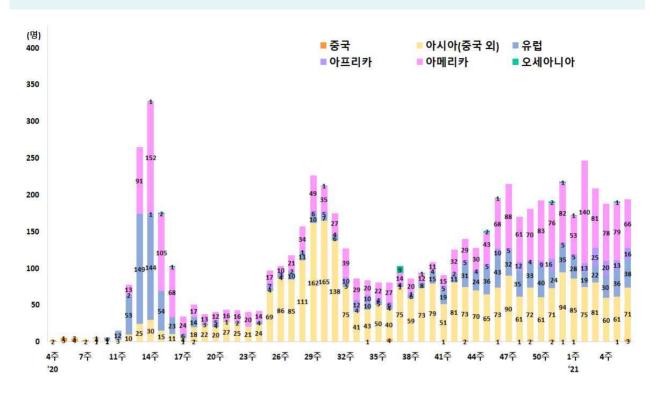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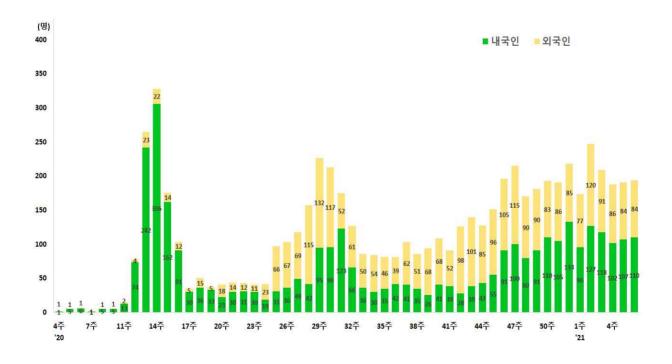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 ' '		20			
				확진환제		명, %)				
지역	누계	해외 유입	소계	<b>집단발</b> 신천지 관련	<b>생 관련</b> 집단 발병	해외유입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서울	25,023	818	9,454	8	9,358	88	8,150	6,601	143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부산	2,876	118	1,770	12	1,702	56	605	383	14	• <b>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b>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대구	8,378	128	6,175	4,512	1,656	7	1,146	929	18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인천	3,948	207	1,872	2	1,860	10	1,212	657	25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광주	1,883	110	1,483	9	1,468	6	159	131	12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대전	1,115	49	597	2	594	1	299	170	8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b>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b>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울산	943	83	672	16	652	4	113	75	2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세종	197	25	89	1	87	1	45	38	0	• 시출 도당한 임승인기식원 된한(112명)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경기	20,450	1,387	7,909	29	7,802	78	6,887	4,267	114	<ul><li>서울 용산구 건설현장 관련(123명)</li><li>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li></ul>
강원	1,730	64	982	17	964	1	446	238	1	<최근 발생 주요 사례>
충북	1,616	85	860	6	847	7	424	247	2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충남	2,100	136	1,037	0	1,036	1	559	368	13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교회 관련(226명)
전북	1,059	102	728	1	726	1	131	98	4	<ul> <li>경기 양주시 육류가공업체 관련(106명)</li> <li>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397명)</li> </ul>
전남	762	65	534	1	523	10	90	73	1	· 충북과도구승당/전찬당/생기병원관현472명
경북	3,064	136	2,149	565	1,583	1	468	311	7	<ul> <li>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71명)</li> </ul>
경남	2,060	141	1,289	33	1,224	32	357	273	12	• 광주 서구 교회 관련(130명)
제주	535	33	337	0	336	1	94	71	6	<ul><li>전북 순창군 요양병원 관련(122명)</li><li>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808명)</li></ul>
검역	2,785	2,785	0	0	0	0	0	0	11	• 경북 구미시 종교시설2 관련(128명)
상계	80,524	6,472	37,937	5,214	32,418	305	21,185	14,930		• 부산 금정구 요양병원 관련(93명)
합계	(%)	(8.0)	(47.1)	(6.5)	(40.3)	(0.4)	(26.3)	(18.5)	393	<ul> <li>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19명)</li> </ul>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 (2.6. 0시 기준)

	21.11.11.11			익명검사(건)			
구분	임시선별 검사소 수 (개소) <sup>1)</sup>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 <sup>2)</sup>	확진자(명)
신규	0	32,406	32,220	0	186	0	56
서울	0	13,872	13,710	0	162	0	32
경기	0	16,998	16,974	0	24	0	18
인천	0	1,536	1,536	0	0	0	6
누계	131	1,598,735	1,577,865	4,235	16,587	48 <sup>3)</sup>	4,554
서울	53	747,149	739,727	1,485	5,917	20	2,374
경기	70	723,361	710,178	2,719	10,437	27	1,851
인천	8	128,225	127,960	31	233	1	329

<sup>1) (</sup>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1.31.~2.6.]

구 분	1.31.	2.1.	2.2.	2.3.	2.4.	2.5.	2.6.	주간누계	총 누계
계	48,800	33,651	81,852	73,843	74,427	72,452	78,581	463,606	7,492,088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 <sup>1)</sup>	24,290	21,024	49,571	45,301	46,381	44,083	46,175	276,825	5,893,353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건) <sup>2)</sup>	24,510	12,627	32,281	28,542	28,046	28,369	32,406	186,781	1,598,735
신규 확진자 수(명)	354	305	336	467	451	370	393	2,676	80,524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명) <sup>3)</sup>	36	37	36	78	85	56	56	384	4,554

<sup>1) (</sup>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sup>2) (2</sup>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sup>&</sup>lt;sup>3)</sup> 양성 32건, 음성 16건

<sup>&</sup>lt;sup>2)</sup>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 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③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 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 누적발생 73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7 4	누적 팀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구분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발생자 수 <sup>*</sup>
미국†	26,172,274	443,256			1.69	7,907.03
인도	10,802,591	154,823	12,408	120	1.43	782.80
브라질	9,339,420	227,563	56,002	1,254	2.44	4,392.95
러시아	3,934,606	75,732	16,688	527	1.92	2,696.78
영국	3,892,463	110,250	20,634	915	2.83	5,732.64
프랑스	3,221,178	77,548	23,148	355	2.41	4,932.89
스페인	2,913,425	60,802	11,388	85	2.09	6,225.27
이탈리아	2,597,446	90,241	13,656	421	3.47	4,293.30
터키	2,508,988	26,467	7,909	113	1.05	2,976.26
독일	2,264,909	60,597	12,908	855	2.68	2,702.76
콜롬비아	2,125,622	54,877	11,025	301	2.58	4,176.07
아르헨티나	1,952,744	48,539	9,196	113	2.49	4,320.23
멕시코	1,886,245	161,240	12,153	1,707	8.55	1,463.34
폴란드	1,539,564	38,712	6,053	368	2.51	4,072.92
남아프리카공화국	1,466,767	45,605	3,751	261	3.11	2,473.47
이란	1,445,326	58,256	7,040	67	4.03	1,720.63
우크라이나	1,237,169	23,387	4,923	158	1.89	2,831.05
페루	1,158,337	41,538	8,573	184	3.59	3,510.11
인도네시아	1,123,105	31,001	11,434	231	2.76	410.64
체코	1,021,477	16,976	8,125	150	1.66	9,546.51
네덜란드	993,430	14,234	4,246	67	1.43	5,809.53
캐나다	789,651	20,355	3,234	142	2.58	2,094.56
포르투갈	748,858	13,482	7,914	225	1.80	7,341.75
칠레	740,237	18,731	3,592	155	2.53	3,875.59
루마니아	738,152	18,675	2,668	75	2.53	3,844.54
방글라데시	537,030	8,175	485	13	1.52	326.07
필리핀	531,699	10,997	1,581	55	2.07	485.13
일본	399,048	6,135	2,619	115	1.54	315.45
헝가리	373,564	12,930	1,576	98	3.46	3,851.18
네팔	271,602	2,033	171	2	0.75	933.34
미얀마	141,104	3,163	177	3	2.24	259.38
중국	89,681	4,636	12	0	5.17	6.23
키르기스스탄	84,920	1,420	88	2	1.67	7.03
우즈베키스탄	78,989	621	73	0	0.79	313.38
태국	22,644	79	586	0	0.35	32.44
베트남	1,957	35	9	0	1.79	2.01
대한민국	80,524	1,464	393	5	1.82	155.35

<sup>\*</sup>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sup>†</sup>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발생 업데이트 없음)









#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 ~ '21.2.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ul> <li>▶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li> <li>★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li> <li>-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li> </ul>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mark>홀덤펍</mark>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16m²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ul> <li>▶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시설 면적 8m²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li> <li>*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li> <li>▶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m²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li> </ul>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ul> <li>▶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li> <li>▶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li> <li>▶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li> <li>▶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 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li> </ul>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파티룸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겨울스포츠사설 포함)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격렬한 집단운동(GX류) 프로그램은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 샤워실 운영 시 이용자간 한 칸 띄우기. 탈의실 내 마스크 착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쌀(장)	<ul> <li>▶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li> <li>▶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li> <li>▶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li> <li>▶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li> <li>▶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li> <li>▶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li> <li>▶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li> <li>*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li> </ul>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ul> <li>▶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li> <li>*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li> <li>▶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li> <li>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li> <li>▶ 숙박시설 운영 금지</li> <li>*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li> </ul>
직업훈련기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b>시설 면적 8m²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b>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ul> <li>▶ 시설 면적 16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li>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li> </ul>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mark>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mark>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u>▶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u> <u>▶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u> <u>▶ 집객행사 금지</u> <u>▶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u>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트·상점 (300㎡ 이상)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ul> <li>▶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li> <li>▶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li> <li>▶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li> <li>▶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li> <li>▶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li> <li>안내문 게시</li> </ul>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구분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등교	▶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은 행사 금지			
직장근무	<ul> <li>▶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li> <li>*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li> <li>-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li> <li>-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li> <li>▶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li> <li>*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li> </ul>			









#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 ~ '21.2.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ul> <li>▶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li> <li>★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li> <li>-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li> </ul>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u>▶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u>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ul> <li>▶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음식섭취 금지</li> <li>▶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li> </ul>				
식 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ul> <li>▶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나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li> <li>▶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li> <li>▶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도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li> <li>▶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집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li> </ul>				
파티룸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ul> <li>▶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li> <li>★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li> <li>▶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li> </ul>			
실내체육시설 (실내겨울스포츠시설 <i>포</i> 함)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ul> <li>▶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li> <li>▶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li> <li>▶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li> <li>▶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li> </ul>			
(스키장 방상장 눈쌀(장)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ul>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li> <li>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li> <li>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li> </ul>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mark>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mark>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 <mark>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mark>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구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ul><li>▶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li><li>▶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 이후 운영 중단</li></ul>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m'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ul> <li>▶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li> <li>▶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li> <li>▶ 집객행사 금지</li> <li>▶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li> </ul>			
마트·상점 (300m² 이상)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ul> <li>▶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li> <li>▶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li> <li>▶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li> <li>▶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li> <li>▶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li> </ul>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다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 행사 금지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붙임 5 설 특별방역대책 주요내용

### □ 대책 개요

- 기간 : 2. 1.(월) ~ 2. 14.(일) \* 설 연휴 : 2.11.(목)~2.14.(일)
- **방향** :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

## □ 주요 내용

- (교통수단·교통시설 방역 강화)
  -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검토, 연안여객선 승선 인원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
  - 고속도로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 운영 및 실내 취식 금지
- (안전한 추모방안 마련)
  -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 제공
  - 명절 전후 **봉안시설** 총 5주(1월 4주~2월 4주)간 **사전예약제 운영** 및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
  -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수용가능 인원의 30%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등) 관리
-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면회방안)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영상 통화를 이용한 면회 시행 권고
- (방역 및 의료대응)
  - **질병관리청 콜센터 24시간** 대국민 **상담 안내**, 비상진료체계(병상, 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차질없이 운영, 강화된 특별입국 절차** 지속 실시 등









## 설 연휴 방역수칙 포스터











# 수도권·수도권 외 목욕장업 방역지침

### 수도권 목욕장업 관련 방역지침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확인 4주 보관후폐기)
-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16m²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 사우나·한증막·찜질 시설 운영 금지

### 이용자 수칙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 마스크 착용
-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16m²당 1명)
- ▶ 사우나·한증막·찜질 시설 이용 금지

### □ 수도권 외 목욕장업 관련 방역지침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출입명부 비치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8m²당 1명)
  -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이용자 수칙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8m²당 1명)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IM 선교회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및 관련환자 현황

○ 11개 시·도 40개 시설 중 5개 시·도 6개 시설에서 397명(+3) 확진

시·도	확진자 발생 시설명		확진자	비고
6개소			397 (+3)	
	광주 CAS/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관련	학생 및 교직원 관련	131 (+1)	
광주		예수복제 캠프 관련 (1.18.~1.20.)	33	울산 한다연구소 3명 양산 베들레헴 TCS 7명 서울 방문자 관련 4명 경기 방문자 관련 19명 포함 * 경기 1명을 서울로 재분류
	광주 에이스 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50	북구교회 11명, 어린이집 20명 관련 사례로 포함
대전	IM 선교회 본부 (IEM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MTS 과정)		181 (+2)	IEM 141명(+2) / MTS 40명 (홍천에서 확진된 39명 포함)
울산	한다연구소		(3)	광주 TCS 예수복제 캠프에 포함
경기	안성 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2	예수복제 캠프 방문자 및 추가전파자 분류 변경
경남	양산 베들레헴 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7)	광주 TCS 예수복제 캠프에 포함

<sup>\*</sup> 시·도별 관련 시설현황(총 40개소) : 서울(4), 부산(2), 대구(1), 인천(2), 광주(5), 대전(2), 울산(1), 경기(11), 강원(1), 충남(1), 전남(3), 경북(4), 경남(3)

<sup>※</sup>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워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 · 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 · 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 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갂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별첚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 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 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 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 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